

損害保險產業의 收益性과 料率算定 改善方向

朴 承 雋
(延世大學校 教授・經營學博士)

目 次

- I. 序 論
- II. 損害保險產業의 收益性과 料率政策
- III. 支給準備金 산정방법과 문제점
- IV. 事業費 配賦方案과 문제점
- V. 結 論

I. 序論

保險은 개인과 기업의 經濟活動을 촉진하며, 만약의 경우 신속한 損失 補填을 제공하는 사회적으로 명백하게 유익한 상품(unambiguous social goods)이다. 또한 축적된 資産의 장기적, 안정적 운용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부응하는 資産運用을 통하여서는 국민의 福祉增進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더우기 保險產業이 거수하는 보험료는 전체 국민 소득의 10%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수많은 保險產業 從事者와 保險契約者를 생각하여 볼 때 보험 산업의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은 지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保險產業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育成, 發展되어 가기 위하여서는 保險產業으로 충분한 資本이 유입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적절한 收益의 유지가 전제가 될 것이다.

收益 水準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는 保險料 水準이며, 保險料의 算定은 일반상품의 가격결정과 달리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보험금과 기타 사업비용 등이 料率算定 이전에 확정될 수 없으며 보험기간이 終了된 일정기간 후에 原價가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損害保險 料率算定에 있어서는 保險對象이 다양하며 그에 따른 引受危險도 천차만별이므로 生命保險料率 算定에서와 같은 死亡率表를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제한된 과거의 경험자료를 기초로 하여 미래의 損害 및 事業費 등을 예측하여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損害保險 豫定料率의 算定은 適正性(adequacy), 非過度性(non-excessiveness), 그리고 公正한 差別性(fair discrimination)이라는 세가지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그 이유는 우선 適正性이 결여되었을 때

는 지급불능상태, 양질의 서비스 부재, 보험공급의 제한 등의 현상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保險料率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을 때는 계약자의 부담가중, 보험회사의 방만한 경영관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정한 차별성의 결여는 보험통계, 회계제도의 미발달과 건전한 보험경영 철학의 빈곤에서 초래될 수 있다.

본 글은 損害保險産業의 收益性을 다른 금융기관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조명하여 보고 豫定料率의 算定이 위에 언급된 세가지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산정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結論的으로 개괄적인 改善方向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II. 損害保險産業의 收益性과 料率政策

韓國 損害保險産業의 成長率은 <표2-1>에서와 같이 당해기간 동안의 經濟成長率을 크게 上廻하고 있으며, <표2-2>에서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볼 때도, 각 成長性 指標들이 대체로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표2-3>에서 다른 금융기관들과 收益性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리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13개 업종중 自己資本 收

<표2-1>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손해보험산업 성장 추이

	84	85	86	87	88	89	평균
GNP(10억)	70,084	78,088	90,589	106,024	126,231	141,066	-
경제성장률(%)	9.3	7.0	12.9	13.0	12.4	6.7	10.22
수입보험료(10억)	874	1,017	1,195	1,535	1,922	2,639	-
증가율	14.17	16.31	17.58	28.41	25.21	37.30	23.16
수입보험료/GNP(%)	1.25	1.30	1.32	1.45	1.52	1.87	-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89

<표2-2>각 금융기관의 최근 5년간 성장성 지표의 평균

(단위 : %)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손해보험업	30.05	52.93	214.30
시 중 은 행	10.08	62.43	79.19
지 방 은 행	17.90	78.34	59.90
종 합 금 융	23.38	20.07	12.76
단 자 업	25.94	20.98	25.26
증 권 업	83.28	116.85	118.75
신용금고업	21.91	17.01	23.15
창업투자업	20.61	26.19	15.70
생명보험업	29.66	40.37	1793.79
투자신탁업	26.74	34.84	59.60
리 이 스 업	36.40	33.72	26.93
투자자문업	122.77	141.99	65.63
신용카드업	86.98	107.99	-256.92

*1985-1989년 까지의 평균

* 창업투자업 88-90년 평균

리이슨업 86-89년 평균

투자자문업 89-90년 평균

신용카드업 89-90년 평균

<표2-3>각 금융기관의 수익성 지표의 5년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 %)

	이익/자기자본		주당 순이익		순이익/총자산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손해보험업	7.46	4.25	24.71	15.31	0.85	0.51
시 중 은 행	5.38	1.16	9.50	2.06	0.28	0.26
지 방 은 행	6.17	1.67	12.41	4.34	0.40	0.18
종 합 금 융	16.80	1.87	48.81	13.30	1.95	0.23
단 자 업	10.18	0.71	20.45	3.23	1.69	0.34
증 권 업	10.44	3.35	26.29	11.10	1.15	0.34
신용금고업	12.75	1.40	30.92	7.56	1.29	0.15
창업투자업	4.47	0.54	3.95	0.89	1.64	0.37
생명보험업	28.47	67.85	236.22	902.38	0.03	0.86
투자신탁업	24.55	5.86	65.96	27.00	11.53	3.14
리 이 스 업	14.32	1.07	24.76	2.08	0.87	0.07
투자자문업	-22.30	16.76	자료미비	-	18.20	13.33
신용카드업	-3.40	1.03	-12.81	8.90	0.35	0.13

는 지급불능상태, 양질의 서비스 부재, 보험공급의 제한 등의 현상들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保險料率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을 때는 계약자의 부담가중, 보험회사의 방만한 경영관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정한 차별성의 결여는 보험통계, 회계제도의 미발달과 건전한 보험경영 철학의 빈곤에서 초래될 수 있다.

본 글은 損害保險産業의 收益性을 다른 금융기관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조명하여 보고 豫定料率의 算定이 위에 언급된 세가지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산정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結論的으로 개괄적인 改善方向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II. 損害保險産業의 收益性和 料率政策

韓國 損害保險産業의 成長率은 <표2-1>에서와 같이 당해기간 동안의 經濟成長率을 크게 上廻하고 있으며, <표2-2>에서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볼 때도, 각 成長性 指標들이 대체로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표2-3>에서 다른 금융기관들과 收益性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리 높은 수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13개 업종중 自己資本 收

<표2-1>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손해보험산업 성장 추이

	84	85	86	87	88	89	평균
GNP(10억)	70,084	78,088	90,589	106,024	126,231	141,066	-
경제성장률(%)	9.3	7.0	12.9	13.0	12.4	6.7	10.22
수입보험료(10억)	874	1,017	1,195	1,535	1,922	2,639	-
증가율	14.17	16.31	17.58	28.41	25.21	37.30	23.16
수입보험료/GNP(%)	1.25	1.30	1.32	1.45	1.52	1.87	-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1989

<표2-2>각 금융기관의 최근 5년간 성장성 지표의 평균

(단위: %)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손해보험업	30.05	52.93	214.30
시중은행	10.08	62.43	79.19
지방은행	17.90	78.34	59.90
종합금융	23.38	20.07	12.76
단자업	25.94	20.98	25.26
증권업	83.28	116.85	118.75
신용금고업	21.91	17.01	23.15
창업투자업	20.61	26.19	15.70
생명보험업	29.66	40.37	1793.79
투자신탁업	26.74	34.84	59.60
리스업	36.40	33.72	26.93
투자자문업	122.77	141.99	65.63
신용카드업	86.98	107.99	-256.92

*1985-1989년 까지의 평균

* 창업투자업 88-90년 평균

리스업 86-89년 평균

투자자문업 89-90년 평균

신용카드업 89-90년 평균

<표2-3>각 금융기관의 수익성 지표의 5년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

	이익/자기자본		주당 순이익		순이익/총자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손해보험업	7.46	4.25	24.71	15.31	0.85	0.51
시중은행	5.38	1.16	9.50	2.06	0.28	0.26
지방은행	6.17	1.67	12.41	4.34	0.40	0.18
종합금융	16.80	1.87	48.81	13.30	1.95	0.23
단자업	10.18	0.71	20.45	3.23	1.69	0.34
증권업	10.44	3.35	26.29	11.10	1.15	0.34
신용금고업	12.75	1.40	30.92	7.56	1.29	0.15
창업투자업	4.47	0.54	3.95	0.89	1.64	0.37
생명보험업	28.47	67.85	236.22	902.38	0.03	0.86
투자신탁업	24.55	5.86	65.96	27.00	11.53	3.14
리스업	14.32	1.07	24.76	2.08	0.87	0.07
투자자문업	-22.30	16.76	자료미비	-	18.20	13.33
신용카드업	-3.40	1.03	-12.81	8.90	0.35	0.13

益率면에서 여덟번째, 株當收益率면에서 일곱번째, 總資產 收益率면에서 아홉번째를 나타내고 있다.

收益의 安定性을 자기자본 수익률, 주당수익률, 총자산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하여 볼 때, 損害保險産業은 자기자본 수익률면에서 네번째, 주당 순이익률면에서 세번째, 총자산 수익률면에서 전체 13개 업종중 네번째로 나타났다. 부담하는 危險의 크기가 크면 그에 따른 收益率도 높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財務理論으로 볼 때, 保險産業의 危險尺度로서의 收益率의 표준편차와 수익률 수준간에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달리 설명한다면, 統計期間의 限界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은 내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최근에 손해보험산업 수익률의 不安定性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요구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타 금융기관들보다 비교적 낮은 수익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손해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위험과 수익(risk and return)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 資本流入의 圓滑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손해보험요율 정책의 수립은 그러한 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손해보험산업의 料率體系는 일부 손해보험종목에서 극히 제한적인 料率競爭(範圍料率)은 허용되었으나 실질적인 價格競爭이 유발되지는 못하는 협정요율체계의 기초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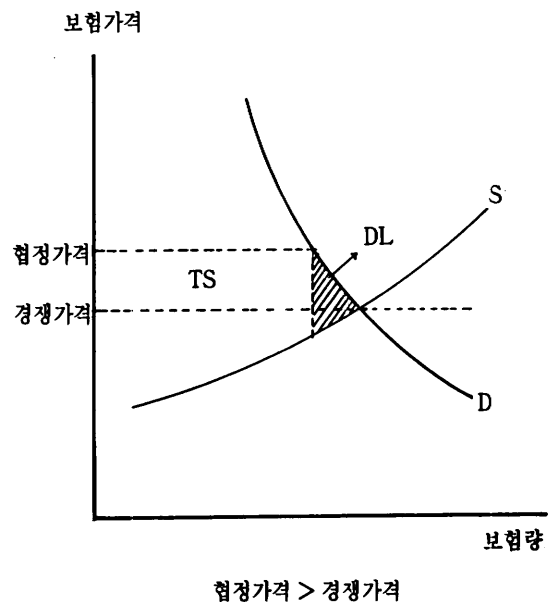
協定料率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競爭料率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낮게 책정되어질 수도 있다. 협정요율이 경쟁요율보다 높을 경우 그림<2-1>에서와 같이 면적 DL만큼의 절대복지 상실(deadweight loss)을 유발하

며, 면적 TS(transferred surplus)에 해당하는 경제적 혜택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사업자에게 이전시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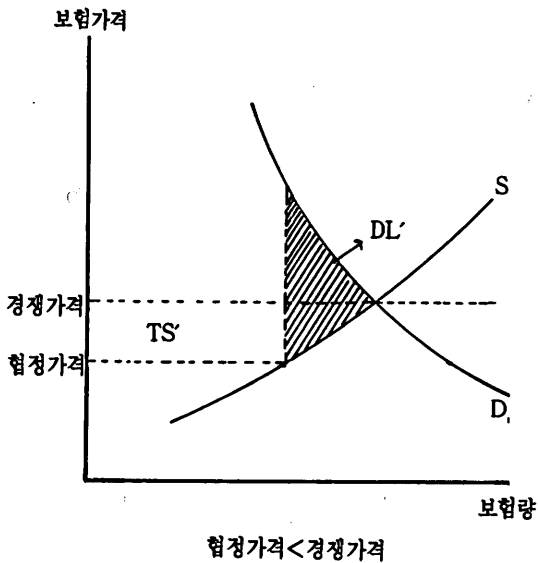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상황에서 價格非彈力的인 需要性向으로 말미암아 수요의 감소는 미미하여, 보험계약자의 부담은 과중한 상태가 된다. 반면, 협정요율이 경쟁요율보다 낮을 경우 그림<2-2>에서와 같이 DL'만큼의 絕對福祉 喪失이 발생되고 면적 TS'에 해당되는 경제적 혜택이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계약자에게 이전되어 진다. 그러나 TS'는 TS에 비하여 같은 수준의 요율차이라면 훨씬 적은 규모이며 공급의 價格彈力的인 性向은 급격한 공급의 감소를 초래하게된다. 또한 이 경우 DL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절대복지상실 부담(DL<DL')의 대부분을 보험계약자가 지게된다.

결론적으로 협정요율은 가능한한 경쟁요율에 접

<그림2-1>



<그림2-2>



근하여야만 계약자의 福祉 喪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공급부족현상과 경영관리의 비효율성을 防止할 수 있다. 다만 完全競爭下에서의 경쟁요율은 이론적인 것이며, 협정요율의 경쟁요율에의 접근은 豫定損害率과 豫定事業費率의 算定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Ⅲ. 支給準備金 산정방법과 문제점

손해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그 개념상 크게 純保險料法과 損害率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보험료법은 요율조정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신요율을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순보험료법은 다음의 공식을 활용하고 있다.

FPP(formula pure premium) : 공식에 따라 나온 순보험료

IPP(indicated pure premium) : 경험 기간 동안의 실제의 순보험료

UPP(underlying pure premium) : 현행요율하에서의 순보험료

Z (credibility factor) : 신뢰계수

손해율법은 實際損害率과 豫定損害率을 비교하여 요율조정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써 아래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조정한다.

$$\text{요율조정율} = \frac{A-E}{E} \cdot Z$$

A(actual loss ratio) : 실제 손해율

E(expected loss ratio) : 예정 손해율

Z(credibility factor) : 신뢰계수

여기서 손해율은 既生損害額(incurring loss)을 經過保險料(premium)로 나누어 준 것이다.

또한 기생손해액과 경과보험료는 다음의 방법(역년식 : calendar-year method)으로 산출한다.

$$\text{기생손해액} = \text{기말지급준비금} + \text{지급보험금} - \text{기초지급준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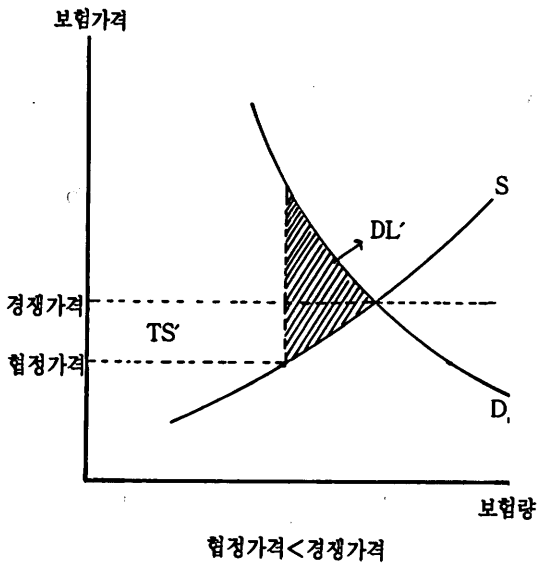
$$\text{경과보험료} = \text{기초미경과보험료적립금} + \text{원수 보험료} - \text{기말미경과보험료적립금}$$

현행 손해보험산업의 '損害保險 會計規定'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종전까지 적용되었던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과 '보험회사의 표준회계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새로운 회계규정의 내용은 주로 保險契約準備金에 관한 것인데 보험계약준비금은 지급준비금,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그리고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되어 진다.

새로운 회계규정에서 支給準備金에 대한 내용은 그 규모의 비중으로 보나 추정의 어려움 때문에 가장 관심을 끌게 되는데 특기할 사항은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

<그림2-2>



근하여야만 계약자의 福祉 喪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공급부족현상과 경영관리의 비효율성을防止할 수 있다. 다만 完全競爭下에서의 경쟁요율은 이론적인 것이며, 협정요율의 경쟁요율에의 접근은 豫定損害率과 豫定事業費率의 算定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Ⅲ. 支給準備金 산정방법과 문제점

손해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그 개념상 크게 純保險料法과 損害率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보험료법은 요율조정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주로 신요율을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순보험료법은 다음의 공식을 활용하고 있다.

FPP(formula pure premium): 공식에 따라 나온 순보험료

IPP(indicated pure premium): 경험 기간 동안의 실제의 순보험료

UPP(underlying pure premium): 현행요율하에서의 순보험료

Z (credibility factor): 신뢰계수

손해율법은 實際損害率과 豫定損害率을 비교하여 요율조정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써 아래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조정한다.

$$\text{요율조정율} = \frac{A-E}{E} \cdot Z$$

A(actual loss ratio): 실제 손해율

E(expected loss ratio): 예정 손해율

Z(credibility factor): 신뢰계수

여기서 손해율은 既生損害額(incurring loss)을 經過保險料(premium)로 나누어 준 것이다.

또한 기생손해액과 경과보험료는 다음의 방법(역년식: calendar-year method)으로 산출한다.

$$\text{기생손해액} = \text{기말지급준비금} + \text{지급보험금} - \text{기초지급준비금}$$

$$\text{경과보험료} = \text{기초미경과보험료적립금} + \text{원수 보험료} - \text{기말미경과보험료적립금}$$

현행 손해보험산업의 '損害保險 會計規定'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종전까지 적용되었던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과 '보험회사의 표준회계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새로운 회계규정의 내용은 주로 保險契約準備金에 관한 것인데 보험계약준비금은 지급준비금,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그리고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구분되어 진다.

새로운 회계규정에서 支給準備金에 대한 내용은 그 규모의 비중으로 보나 추정의 어려움 때문에 가장 관심을 끌게 되는데 특기할 사항은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

험, 보증보험 그리고 해외수재보험 등에서 지급준비금 산정에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의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급준비금은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보험사고별 추산금액과 貸借對照表日 이전 5년간의 사고발생년도기준 평균지급보험금방식(APM: average payment method)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保險料算定の 기초가 되는 損害率을 계산함에 있어 경과보험료가 賣出額이라면 분자를 구성하는 지급준비금의 증감액(기말지급준비금과 기초지급준비금의 差額)과 지급보험금은 賣出原價項目에 해당된다.

지난 10여년간의 統計를 살펴볼 때, 손해보험산업의 매출액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원가의 한 요소인 지급보험금도 매출액과 變動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표3-1>에서와 같이 지급준비금의 증감액의 변화는 會社間的 比率이 상당히 差異가 날 뿐더러 同一會社인 경우에도 기간별 증가율이 매우 不規則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82년에는 손해보험산업의 매출액 증가가 평균적으로 30%내외의 增加率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급준비금 증감면에서는 오히려 거의 모든 회사에서 적게는 11%에서 68%까지의 減少率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선 個別事故에 대한 損害額推定の 어려움에서 基因될 수 있으며 평균지급보험금방식(APM)의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추세요소(trend factor), 손해전개요소(loss development)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과 그리

고 회계규정의 變更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統計的 推定方式을 사용함에 있어 필수적인 계약별 사고일자(accident date), 신고일자(report date), 해결일자(settlement date), 그리고 지급일자(payment date)등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자료모음(data grouping)과 최종지급보험금의 용이한 예측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자료표시(data display)의 체제설계(format design)가 미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보고 발생손해액을 일률적으로 經過保險料의 3%로 작용하는 것도 지급준비금 증감추정의 정확성 결여에 기여할 것이며 이 문제 역시 필요한 資料表示의 體制設計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객관적으로 신뢰있는 料率調整作業과 손해보험산업의 적정수익 측면에서의 監督政策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 사업 성과 과시를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의도적으로 하향조정(under-reserve)하였을 경우에는 적정치 못한 요율수준하에서의 성장위주의 영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인하여 최악의 경우 지급불능사태도 초래할 수 있다.

보험계약준비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비상위험준비금의 필요성 여부와 경과보험료에 영업이익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의 適合性 문제이다. 즉 지급준비금이 적정히 계산되었음을 가정한다면 契約者 剩餘金(policyholders surplus)이 非常危險準備金의 대체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현행 지급준비금과 더불어 비상위험준비금 책정방식의 任意性을 고려할 때, 이 준비금의 필요성에 관하여 再檢討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3-1>

손해보험 회사별 보험료와 준비금 증감액 변화

(단위 : 백만원)

회 사	1980		1981		1982	
	순보험료	준비금 증감액	순보험료	준비금 증감액	순보험료	준비금 증감액
동양	18,058	3,581	23,153(28%)	7,185(100%)	28,362(22%)	2,751(-62%)
신동아	19,499	4,858	23,896(22%)	4,574(-6%)	26,966(13%)	1,476(-68%)
대한	17,363	3,389	23,261(34%)	2,957(-13%)	28,911(24%)	946(-68%)
국제	17,059	5,601	23,180(36%)	6,553(17%)	26,843(16%)	4,054(-38%)
고려	18,047	4,405	24,247(34%)	4,422(0%)	29,234(21%)	2,462(-44%)
일동	19,275	5,419	25,752(34%)	3,469(-36%)	29,056(13%)	2,268(-34%)
해동	13,096	3,679	17,837(36%)	3,020(-18%)	18,591(4%)	280(-91%)
안국	21,765	7,400	29,099(34%)	6,905(-7%)	38,602(33%)	6,162(-11%)
현대	25,750	3,618	32,285(25%)	6,824(87%)	37,292(15%)	849(-86%)
럭키	19,540	6,510	24,368(25%)	7,314(12%)	29,473(21%)	1,914(-74%)
자보	105,127	12,963	129,484(23%)	3,706(-71%)	158,973(23%)	5,742(56%)
보보	20,714	3,289	24,947(20%)	3,717(13%)	31,882(28%)	1,219(32%)

회 사	1983		1984		1985	
	순보험료	준비금 증감액	순보험료	준비금 증감액	순보험료	준비금 증감액
동양	36,385(28%)	5,518(101%)	44,028(21%)	2,761(-50%)	50,433(15%)	4,818(75%)
신동아	30,561(13%)	1,967(33%)	35,034(15%)	630(-68%)	40,248(15%)	1,890(200%)
대한	34,112(18%)	3,315(250%)	36,433(7%)	348(-90%)	43,990(21%)	3,054(778%)
국제	32,890(23%)	2,785(-31%)	40,977(25%)	4,461(60%)	49,569(21%)	7,360(65%)
고려	35,659(22%)	2,367(-4%)	36,252(2%)	1,236(-48%)	46,300(29%)	2,872(132%)
일동	33,249(14%)	1,195(-47%)	36,921(11%)	3,107(160%)	40,057(8%)	2,985(-4%)
해동	21,541(16%)	1,018(264%)	26,083(21%)	1,294(27%)	31,529(21%)	4,266(230%)
안국	48,474(26%)	7,059(15%)	59,705(23%)	10,748(52%)	74,425(25%)	14,880(38%)
현대	44,031(18%)	904(6%)	53,803(22%)	4,258(371%)	69,268(29%)	9,519(124%)
럭키	37,377(27%)	3,997(109%)	47,624(27%)	6,604(65%)	57,579(21%)	13,546(105%)
자보	199,831(26%)	43,949(665%)	211,948(6%)	△24,799(-156%)	215,518(2%)	22,470(191%)
보보	41,193(29%)	5,570(357%)	47,022(15%)	10,325(65%)	45,103(-5%)	8,214(-20%)

회 사	1986		1987		1988		1989	
	순보험료	준비금 증감액	순보험료	준비금 증감액	경과보험료	준비금 증감액	경과보험료	준비금 증감액
동양	62,998(25%)	10,547(119%)	78,777(25%)	15,952(51%)	106,072(35%)	26,695(67%)	160,831(51%)	33,766(26%)
신동아	47,604(18%)	3,926(108%)	64,033(35%)	10,623(171%)	83,550(30%)	24,355(129%)	115,006(38%)	21,909(-11%)
대한	54,617(24%)	9,323(205%)	69,153(27%)	11,666(25%)	88,264(28%)	17,954(54%)	120,741(37%)	20,770(15%)
국제	58,486(18%)	13,669(86%)	76,100(30%)	14,527(6%)	88,784(17%)	13,529(-7%)	102,872(15%)	15,227(14%)
고려	55,460(20%)	6,041(110%)	66,699(20%)	4,866(-19%)	80,733(21%)	8,360(72%)	97,480(21%)	5,474(-46%)
일동	42,601(6%)	4,841(62%)	57,198(34%)	14,299(195%)	79,858(40%)	18,334(28%)	110,678(37%)	18,096(-2.3%)
해동	39,592(26%)	5,112(20%)	46,141(17%)	4,145(-19%)	52,915(15%)	4,126(0%)	67,298(29%)	8,637(100%)
안국	98,405(32%)	29,481(98%)	138,278(41%)	42,620(45%)	188,943(37%)	44,697(5%)	264,394(40%)	64,564(44%)
현대	89,916(30%)	19,178(101%)	120,169(34%)	14,825(-23%)	159,983(33%)	35,584(140%)	235,235(48%)	37,784(6%)
럭키	75,573(31%)	24,302(79%)	108,821(44%)	38,203(57%)	163,536(50%)	39,933(5%)	222,848(36%)	36,738(-8%)
자보	214,375(-1%)	19,056(-15%)	235,815(10%)	△2,748(-114%)	260,509(10%)	21,310(875%)	319,305(27%)	20,664(-4%)
보보	48,242(7%)	11,134(36%)	57,801(20%)	11,232(1%)	79,953(38%)	14,487(29%)	118,324(49%)	216(-39%)

※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IV. 事業費 配賦方法과 문제점

손해보험사업자의 所得源泉은 보험영업소득, 투자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험영업소득에 대한 평가는 앞서 설명된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동시에 감안한 合算比率(combined ratio)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 豫定損害率, 豫定事業費率과 實績損害率, 實績事業費率의 괴리는 보험요율조정작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실적합산비율의 계산을 위하여서는 경과보험료에 적절히 대응하는 사업비계산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본장에서는 損害保險料率檢證報告書上의 事業費配賦方法을 檢討하여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보험회사 업무기능은 營業, 損害調査, 一般管理 및 投資業務로 대별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회사 사업비도 이러한 업무기능에 따라 영업비, 손해조사비, 일반관리비 및 투자경비로 나눌 수 있다.

영업비는 각 보험종목의 영업을 위해서 지급한 경비로서, 특히 본사의 영업담당 임직원 및 지점경비가 이에 해당한다. 이 영업비는 보험종목별 계산의 절차상 固有費와 共通費로 구분한다.

固有費란 한 종목 또는 몇개의 보험종목에 관련하여 명확하게 지급한 경비를 말하며, 공통비란 전 보험종목에 관련된 경비로서 보험종목별로 상이하기가 곤란한 경비를 말한다.

損害調査費는 손해조사 및 보험금 지급업무, 사고보고, 지급준비금의 계상관리 및 구상권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경비를 말한다. 또한 손해조사비도 보험 종목별 계산의 절차상 고유비와 공통비로 구분하여 고유비와 공통비기준은 영업비의 경우와

같다.

一般管理費는 영업비, 손해 조사비 및 투자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본사의 관리직 및 일반관리 부분의 경비를 말한다.

管理職이라 함은 회장,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기타임원을 말하며 一般管理部門이라 함은 본사의 기획, 총무, 인사, 경리, 감사 등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관리직 및 일반관리부문의 경비라 하더라도 특정의 보험종목을 위하여 지급한 경비는 일반관리비로 보지 않는다.

投資經費는 투·융자 자산의 取得, 處分, 運營管理에 관한 經費로서 투자업무담당자의 경비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관리업무 담당자의 경비가 이에 해당된다. 이 투자경비는 保險種目別 配賦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업비의 배부기준은 事業費의 特性에 따라 직무분석에 의한 급여 및 업무량 비율, 원수계약 건수 비율, 조정원수보험료비율, 원수보험금지급건수 비율, 원수보험금비율, 전산기 이용 시간 비율, 원수보험료의 금액과 건수의 평균비율, 원수보험금의 금액과 건수의 평균비율 등을 사용한다.

또한 보험종목을 다음의 <표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分類와 小分類로 구분하는데 각각에 따라 배부기준을 달리한다.

배부기준을 요약하면 <표4-2>와 같다.

事業費의 일단계 배부는 사업비를 營業費, 損害調査費, 一般管理費, 投資經費로 4분류하는데, 특정 보험 종목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한 사업비는 직접 배부한다.

4분류된 사업비의 項目중 2개 이상의 항목에 걸쳐 共同으로 해당하는 사업비는 급여와 임금비율, 업무량비율 등 <표4-2>의 배부기준에 의해 배부

<표4-1> 보험종목의 분류

대분류	소분류
화재보험	①주택물건 ②일반물건 ③공장물건 ④창고물건
해상보험	①적하보험 ②선박보험 ③운송보험 ④항공보험 ⑤해양관련종합
자동차보험	①책임보험 ②개인용종합보험 ③업무용종합보험 ④영업용종합보험 ⑤운전자보험 ⑥의화표시보험 ⑦취급업자종합보험
기계보험	①기계보험 ②조립보험 ③건설공사보험 ④전자기기보험
책임보험	①일반배상책임보험 ②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③근재보험
상해보험	①보통상해보험 ②해외여행보험 ③학생안전보험 ④건강생활보험
종합보험	①가정생활보험 ②주택상공종합보험 ③동산종합보험 ④가정종합보험 ⑤재산종합보험 ⑥기타 종합보험
기타특종보험	①도난보험 ②유리보험 ③동물보험 ④원자력보험
장기보험	①장기화재보험 ②장기상해보험 ③장기종합보험

한다.

사업비의 2단계 배부는 영업비와 손해조사비중 특정보험 종목에 지급된 사업비를 固有費라 하며 고유비중 특정의 1개종목에 지급된 사업비를 直接固有費, 특정의 2종목 이상에 공동으로 해당하는 사업비를 複合固有費라 하는데 1개 특정종목에 지급된 것이 명확한 사업비는 해당종목에 직접 배부하고, 복합고유비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해당종목의 給料와 賃金比率, 業務量比率, 事業費 조정원수보험료비율, 건수비율 등 <표4-2>의 배부기준에 의해 保險種目別로 配賦한다.

<표4-2> 사업비의 4분류 및 배부기준표

사업비 내역	경비배분		
	제1차배부기준 (사업비의 4분류)	제2차배부기준 (종목의 대분류)	제1차배부기준 (종목의 소분류)
I. 인건비			
임원급료	A	A	X
급료와임금	A	A	X
복리후생비	A	A	X
퇴직금	일반관리비		D
비례수당	영업비		
잡급여	일반관리비		D
II. 물건비			
대리점수수료	영업비		
대리업무수수료	〃	D	X
손해조사비	손해조사비	X	X
여비교통비	B	B	X
통신비	B	B	X
수도광열비	B	B	X
지급임차료	B	B	X
장부인쇄비	B	B	X
광고선전비	영업비	D	D
차량유지비	B	B	X
보험료	일반관리비		D
수선비	B	B	X
접대비	영업비	D	D
도서신문비	일반관리비		D
회의비	B	B	X
소모품비	B	B	X
조사연구비	영업비	D	D
체육진흥비	일반관리비		D
교육훈련비	B	B	X
전산비	G	G	X
수수료	일반관리비		D
신계약비	영업비	장기에배분	X
수금비	〃	〃	X
유지비	〃	〃	X
모집비	〃	D	D

사업비 내역	경비배분		
	제1차배부기준 (사업비의대분류)	제2차배부기준 (종목의대분류)	제1차배부기준 (종목의소분류)
화보협회비	〃	D	D
협회비	영업비	D	D
보험사고예방비	손해조사비	X	X
채세공과	일반관리비		D
감가상각비	B	B	X
영업잡손	일반관리비		D
대손상각	영업비	D	X
외환차손	일반관리비		D
외화평가손	〃		D
기부금	〃		D
부동산관리비 (임대분제외)	B	B	X
투자경비	투자경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D

주 1) 부동산관리비는 임대분을 제외한 보험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만 보험종목별로 배분한다. 따라서 투자 비용은 위의 부동산관리비(임대분 제외)가 제외된 것임.

2) 표기 기준

담당업무의 급료와 임금비율을 기준	A
담당업무의 업무량비율을 기준	B
원수 계약건수 비율을 기준	C
조정원수보험료 비율을 기준	D
원수보험금 지급건수 비율을 기준	E
원수보험금 비율을 기준	F
전산기 이용시간의 비율을 기준	G
영업비(고유비)의 경우:	
조정원수보험료비율과 계약건수비율의 평균	X
손해조사비(고유비)의 경우:	
원수보험금비율과 원수보험금지급건수비율의 평균	X

3) 사업비조정원수보험료 계산방법

사업비조정원수 보험료 =

$$\text{원수보험료} \times \frac{\text{위험 및 부가보험료}}{100}$$

(보험료 산출기초상의 구성에서 이익률 및 장기보험의 경우 지축보험료 부분은 제외)

공통비는 2차배부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비의 3단계의 배부는 1개의 특정 보험 종목에 지급한 것이 명확한 사업비는 해당 종목에 直接配賦하고, 특정의 2종목 이상에 걸쳐 共同으로 해당하는 사업비는 해당 보험종목의 사업비 조정원수보험료비율, 원수계약건수비율, 원수보험료 비율, 원수보험금 지급건수 비율등 <표4-2>의 배부 기준표에 의하여 배부한다.

영업비중 공통비는 영업비중 고유비의 보험종목별 構成比率에 의해 配賦하고, 손해조사비 중 공통비는 손해조사비 중 고유비의 보험종목별 구성비율에 의해 배부한다.

일반관리비는 보험종목별 사업비조정원수보험료 구성비율에 의해 배부한다.

자동차보험중 綜合保險(개인용종합, 업무용종합, 영업용종합)은 擔保內容에 따라 對人賠償, 對物賠償, 車輛損害, 自損損害로 분류하고 특정항목에 지급된 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각 항목별 예정 사업비 금액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부한다.

사업비배부의 문제점은 크게 보아 첫째 事業費範圍規定의 문제, 둘째 配賦基準上的 문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상기기준에서는 支給損害調査費를 事業費에 包含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급손해조사비는 보험사고의 손해사정과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 손해조사비는 보험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며 우연한 보험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사업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급 손해조사비는 오히려 이를 엄격히 區分하여 보험금에 합산하여 損害率 算定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현행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에 投資不動

產 減價償却費 및 投資經費가 있으며, 투자경비는 有價證券의 매각수수료, 증권거래세, 유가증권의 매각이나 기타 운용자산의 관리에 따른 諸費用을 말한다.

사업비 배부기준에서는 이와 같이 경리부 투융자과(투융자부서)와 총무부 관재과(부동산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건물비를 투자경비로 처리하여 사업비 배부에서 除外시키고 있다.

그런데 현행 손해 보험회사의 조직구조상 투·융자업무, 부동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獨立된 부서가 없는 회사가 많이 있어, 인건비를 제외한 물건비는 投資經費와 事業經費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그리고 손해 보험회사 회계규정에서 營業外費用으로 분류하고 있는 外換差損, 外換評價損, 奇附金 등을 사업비 배부기준에서는 배부대상 비용으로 하여 보험 종목별로 배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영업을 위한 영업경비가 아니라 영업 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배부기준상의 문제로서 事業費 配賦基準表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비용 계정과목이 직무분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給與比率 및 業務量比率에 의하여 보험종목별로 배부되어 진다.

즉, 共通費의 약 47%에 해당하는 금액이 급여비 및 업무량비율에 따라 火災, 海上, 自動車, 傷害, 綜合, 特種, 長期保險으로 분류되고 있다.

職務分析은 각 보험종목별(대분류)로 營業이나 損害 調査業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全職員別로 職務分析表를 작성하여야 한다. 직무분석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1개월(10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여 작성된 전 직원의 직무분석표로

部, 店, 所別 總括表 및 全體의 總括表를 작성하며, 전체의 직무분석표에 나타난 각 보험종목별(대분류)의 구성비율에 따라 共通費를 배부한다.

직무분석은 회사 전체적으로 볼 때 特定 保險種目的 營業, 損害調査 및 一般管理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이를 공통비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

첫째, 職務分析에 의한 方法은 業務量(業務時間)이 많으면 事業經費가 많이 소요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帳簿印刷費는 주로 청약서, 증권, 약관, 상품안내장, 요율서, 각종 장부, 각종 교제제작비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약서, 증권, 약관, 상품안내장등의 비용은 직원들의 보험종목별 업무시간(업무량)에 비례한다기 보다는 주로 保險契約件數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旅費交通費는 주로 국내 출장여비, 해외출장여비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특정보험종목에 대한 업무량(업무시간)이 많다고 해서 실제 출장업무가 꼭 그 보험종목과 관련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職務分析은 全職員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업비 배부과정이 복잡하다.

실제 매년 손해보험 料率檢證報告書를 작성하는데는 보통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간접사업비(공통비)를 배부한 결과 특정 보험종목에 이상치가 발견되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

세째, 전직원이 一定期間(1개월)의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하지만, 현재 標準的인 職務記述書가 작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職務評價도 되어 있지 않고 또한 業務循環補職制度에 따라

이동이 잦으므로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할 수 있다.

V. 結 論

損害保險産業의 料率算定은 적정성(adequacy), 비과도성(non-excessiveness), 그리고 공정한 차별성(fair discrimination)이라는 세가지 기본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며, 특히 적정성의 원칙은 손해보험산업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여 막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며, 손해보험기업의 지급불능(insolvency)사태를 사전에 防止하여 保險契約者의 利益을 保護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보험요율수준이 과도할 경우 그 負擔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자가 지게 되며 또한 放漫한 經營管理가 초래되기도 한다.

손해보험산업의 요율수준이 그러한 세가지 기본원칙에 충실한가의 여부에 대한 평가는 損害保險原價가 事後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과거의 經驗資料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결코 쉬운 작업이라 할 수 없다.

특히 合算比率의 구성요소인 손해율과 사업비용의 정확한 계산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극복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손해 및 사업비의 경험치와 관련된 信賴度 높은 자료의 가용성(availability)문제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대수의 법칙을 활용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험치의 집적이 필요하며 그러한 경험치의 집적과정은 計理的 分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高度의 體系性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개별 손해보험사업자도 모든 손해보험종목에 관련된 충분한 경험치를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保險統計의 集積에 의한 情報의 共有는 개별보험사업자의 예측력을 증가하게 함으로써 보험사업의 위험에 대한 負擔費用을 減少시키게 한다.

또한 보험통계의 집적은 요율산정의 信賴度를 높임으로써 요율산정시 앞서 언급된 세가지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손해율 평가시 고려해야 할 지급준비금의 계산과 분석은 客觀性과 正確性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임의적 적용이 가능한 회계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료모음과 표시체계의 설계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개별보험회사가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서는 개별적인 계산 및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은 작업은 우선 보험통계집적기관에서 선도하여 한국손해보험산업의 現實에 附合하는 '손해보험법정회계원칙(가칭)에 따른 회계 및 통계규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標準化作業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비 배부방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현행 간접사업비의 배부기준은 통일된 기준이 없이 월말보고서 작성, 회사내부의 관리, 경영지도 및 감독, 이원 분석 그리고 손해보험요율산정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사업비 중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4%에 해당하므로 사업비 배부기준에 따라 보험종목별로 배부금액은 크게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보다 效果的이고 效率的인 料率檢證이나 利益管理을 위해서 비용계정과목의 細分化, 직무분석의 體系化등을 통하여 간접사업비 배부기준도 合理的으로 一貫性있게 制定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